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구<br>관 | 기<br>관<br>의<br>장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|



**제 801 호 2013. 2. 25(월)**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28호[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] .....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29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30호[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] .....5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177호[남북교류협력기금 공인 등록 공고] .....6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183호[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.....7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184호[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..... 16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<br>관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

**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  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**

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3 - 28호

##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0조제6항,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02월 20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성 명                | 한라상조(주) 대표이사 박영배            |  |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 주 소                |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2-11         |  |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 점용위치               | 상안동 366, 365<br>천곡동 1056-42 | 하 천 명  | 천 곡 천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 점용목적               | 보도교 신설에 따른 공작물설치            | 점용면적<br>(㎡)  | 구 분  | 일시      | 영구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지방하천   | 891     | 44    |          |
| 점용기간               | ○ 일 시                       | 당초 2013. 01. 07. ~ 2013. 05. 06.<br>변경 2013. 01. 07. ~ 2014. 01. 30. |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○ 영 구                       | 2013. 01. 07. ~ 영구   |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 하천공사의<br>명칭        | 교량 설치공사                     | 하천공사<br>목적   |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도교 설치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 하천공사 시행자<br>성명(주소) | 점용자와 동일                     | 공사기간   | 당초 2013. 01. 07. ~ 2013. 05. 06.<br>변경 2013. 10. 01. ~ 2014. 01. 30.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 공사위치               | 상안동 366번지 외 2필지             |  |  |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 토지 소재지             | 소재지<br>구,군,동,리              | 지 번  | 지목   | 대상면적(㎡) | 면적(㎡) | 소유자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북구 상안동                      | 366  | 천  | 1,798   | 663   | 국(농림수산부) |
|                    | 천곡동                         | 1056-42  | 천  | 1,660   | 43    | 국(농림수산부) |
|                    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8,621   | 229   | 국(국토해양부)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935     |       |          |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- 29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2월 25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0길 20-1(호계동)외 9건

| 종전주소   | 도로명주소 | 도로명 고시일 | 도로명 부여사유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(별지참조)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2. 25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

| 순번 | 중점주소                   | 도로명주소                    | 도로명주소 고시일  | 도로명부여사유   | 도로명 고시일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|
| 1  |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1-14    |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0길 20-1(호계동) | 2013-02-25 | 기존 희망길이 추성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9-08-20 |    |
| 2  |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1-15    |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0길 22(호계동)   | 2013-02-25 | 기존 희망길이 추성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9-08-20 |    |
| 3  | 울산광역시 북구 진곡동 853       | 울산광역시 북구 울달길 74(진곡동)     | 2013-02-25 | 기존 자연과을인 울달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   | 2004-08-09 |    |
| 4  |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07-17    |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5길 15(연암동)    | 2013-02-25 | 고려 종렬왕개 이 곳 바위에서 성스러운 흰 연꽃이 수놓은 듯 피어나 백연암이라 이름 붙여졌다가 연암으로 불리게 됨. 현재도 밭중동명으 사용되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| 2004-01-05 |    |
| 5  | 울산광역시 북구 호문동 140 2     | 울산광역시 북구 호산1길 37 1(호문동)  | 2013 02 25 | 호문동과 산성마을 철자를 따서 도로명을 부여  | 2004 01 05 |    |
| 6  |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75B 5I |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3길 15(진장동)    | 2013-02-25 |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 | 2004-12-27 |    |
| 7  |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7-10    |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20(호계동)    | 2013-02-25 | 기존 희망길이 추성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9-08-20 |    |
| 8  |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1-36    |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16(양정동)    | 2013-02-25 | 양정이라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며 현재의 지역 대크지명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4-01-05 |    |
| 9  |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9B 5L |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2길 24(진장동)   | 2013-02-25 |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속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 | 2004-12-27 |    |
| 10 |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91-12    |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65-6(호계동)   | 2013-02-25 | 동대산 인근에 위치한 구획단지내 지역이므로 도로명 부여  | 2001-03-22 |    |

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3 호

##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0조제6항,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02월 21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|  |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--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이정장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울산광역시 북구 배곡동 795-74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점용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천동 745-118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 천 명    | 매 곡 천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점용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작물의 신축을 위한 점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용면적 (㎡)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시      | 영구       |
|  |  |          | 지방하천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| 546      |
| 점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3. 02. 25. ~ 영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하천공사의 명칭<br>하천공사 시행자<br>성명(주소)<br>공사위치 | 매곡중산지구 차집관로 매설공사<br>점용자와 동일<br>신천동 745-118번지 | 하천공사 목적  | 관로매설을 위한 공작물 신축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
|  |  | 공사기간     | 2013. 02. 25. ~ 2013. 03. 31. |         |          |
| 토지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 | 지 번      | 지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장면적(㎡) | 면적(㎡)    |
|  | 구,군 동,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소유자      |
|  | 북구 신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45-118  | 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1,552  | 546      |
|  |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국(국토해양부) |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 177호

# 공 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」 제6조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」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2월 25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

- 신규공인 최초사용 가능일: 2013년 2월 25일
- 등록 사유: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
- 등록 공인

| 공 인 명                   | 규 격(cm) | 서 체   | 인 영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|
| 울산광역시북구남북<br>교류협력기금운용관인 | 2.0×2.0 | 한글전서체 |     |
| 울산광역시북구남북<br>교류협력기금출납원인 | 1.8×1.8 | 한글전서체 |     |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183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2월 2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 이유

- 농수산과 시설재생담당을 주민참여과로 부서조정 및 명칭변경하고, 건축주택과 분장사무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내용

가. 농수산과 시설재생담당 부서조정 및 명칭변경

- 당초 : 농수산과 시설재생담당  
변경 : 주민참여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담당
- 조정 사유 :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생에 관한 업무를 주민참여형 공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과로 부서 조정 및 명칭 변경

나. 건축주택과 분장사무중 일부개정(국,과,담당 명칭 정정)

- 분장사무 개정 :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시설물 신축시 공사감독(회계과 공공시설담당 사무 제외)에 관한 사항
- 조정 사유 : 현행 직제에 맞게 '도시경제국'을 '건설도시국'으로, '시설 재난관리과 시설담당'을 '회계과 공공시설담당'으로 정정

### 3. 의견 제출

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.3.4.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기획홍보실장, 전화: 052-241-7102, 팩스: 052-241-710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4. 기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」 일부개정안은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기획홍보실에 비치하여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.

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중 주민참여과, 건축주택과, 농수산과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 구분청 실·과 사무분장표

| 부 서 명 | 분 장 사 무  |
|-------|--|
| 주민참여과 | 1. 주민참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<br>2. 시민단체 신설, 육성, 지원에 관한 사항<br>3. 주민참여리더 발굴, 육성, 교육에 관한 사항<br>4. 전국 시장·군수·구청장 협의에 관한 사항<br>5. 북한 이탈주민 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<br>6.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<br>7.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<br>8.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<br>9.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<br>10. 각종여론 및 동향관리<br>11. 구청장 동 방문 및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<br>12. 명절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<br>13.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<br>14.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에 관한 사항<br>15.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<br>16.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<br>17. 친절배가 운동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<br>18. 기관단체 협의회에 관한 사항<br>19. 주민조례제정·개폐에 관한 사항<br>20.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<br>21.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및 피해신고서 접수와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<br>22.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<br>23.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<br>24.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<br>25. 주민자치위원회 운영·지도에 관한 사항<br>26.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<br>27. 동사무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<br>28. 통·반 조직운영 및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<br>29. 동 예산 운영 및 동행정 업무 종합조정(동시달 문서통제 등)에 관한 사항<br>30. 적십자 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<br>31.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<br>32. 주민만남의 날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<br>33. 새마을소득특별자금운영에 관한 사항<br>34. 커뮤니티비즈니스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<br>35.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조직 신설 육성<br>36. 마을기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<br>37.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<br>38. 평생학습 정책연구와 주민요구 조사<br>39. 국내외 평생학습 기관·단체 간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구축<br>40.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<br>41.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관리<br>42.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연수사업 등 시책 추진<br>43.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개발·보급과 특화사업 개발 운영<br>44. 연도별 사업 평가(성과집, 영상물 제작 등)<br>45. 평생학습 축제운영과 참가<br>46.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<br>47. 평생학습 주민교육(교양, 전문교육) 사업 추진<br>48. 평생교육센터 관리와 운영지원<br>49. 평생교육협의회,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관리 운영 |

| 부 서 명 | 분 장 사 무   |
|-------|---|
| 주민참여과 | 50. 평생학습 강사 은행제 운영<br>51. 그 밖에 평생학습프로그램(제3대학, 주민자치대학 등) 운영에 관한 사항<br>52. 추억의 학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<br>53. 해병대 전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<br>54. 교육경비 지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<br>55.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<br>56. 지역자원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<br>57.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<br>58.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<신설> |

| 부 서 명 | 분 장 사 무   |
|-------|---|
| 건축주택과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수립</li> <li>2.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에 관한 사항(GB 및 국공유지 제외)</li> <li>4.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·운영</li> <li>5.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건축물 철거·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</li> <li>9. 건축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10.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11. 건축시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</li> <li>12.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13. 건축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</li> <li>14.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</li> <li>15.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</li> <li>16.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17.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</li> <li>18. 기타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</li> <li>19. 시설(건물, 토지)등원에 관한 사항</li> <li>20.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</li> <li>21.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</li> <li>22.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</li> <li>23.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24.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25. 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독 및 조치에 대한 사항</li> <li>26.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27. 건축선의 지정·고시에 관한 사항</li> <li>28. 건축에 관한 조사 계획, 통계에 관한 사항</li> <li>29.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</li> <li>30. 건축물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</li> <li>31. 건축사 및 공사 감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</li> <li>32. 공사감리자 지정, 변경,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</li> <li>33. 건축에 관한 기술지도 및 민원지도에 관한 사항</li> <li>34.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사항</li> <li>35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(주거환경개선, 주택재개발, 도시환경정비)에 관한 사항</li> <li>36. 농어촌주거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</li> <li>37.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38. 주택법에 의한 사용감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39.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·신고에 관한 사항</li> <li>40.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</li> <li>41.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</li> <li>42.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</li> <li>43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 사업인가에 관한 사항</li> <li>44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 관리처분 인가에 관한 사항</li> <li>45.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</li> <li>46. 공동주택 주택관리 업무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</li> <li>47.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48. 재해피해 건축물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사항</li> <li>49. 도시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</li> </ol> |

| 부 서 명 | 분 장 사 무  |
|-------|--|
| 건축주택과 | 50. <삭제 08-12-24><br>51. <삭제 08-12-24><br>52. <삭제 08-12-24><br>53. <삭제 08-12-24><br>54. <삭제 08-12-24><br>55. <삭제 08-12-24><br>56. <삭제 08-12-24><br>57. <삭제 08-12-24><br>58. <삭제 08-12-24><br>59.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<br>60.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<br>61.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<br>62.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지도, 관리에 관한 사항<br>63.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<br>64. 옥외광고물 심의에 관한 사항<br>65.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,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<br>66.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<br>67.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<br>68.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<br>69. 옥외광고물 위반에 관한 사항<br>70.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시설물 신축시 공사감독(회계과 공공시설담당 사무 제외)에 관한 사항 <개정><br>71. 건축물현황 정리에 관한 사항 <신설 08-12-24><br>72. 건축물대장 등록에 관한 사항 <신설 08-12-24><br>73.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<신설 08-12-24><br>74.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<신설 08-12-24><br>75. 건축물 부존재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<신설 08-12-24><br>76.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<신설 08-12-24> |

| 부 서 명 | 분 장 사 무   |
|-------|---|
| 농수산과  | 1. 농업행정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<br>2.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<br>3. 농지개량에 관한 사항<br>4. 농지배농에 관한 사항<br>5. 수도권 증산사업에 관한 사항<br>6. 경지이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<br>7. 농가부업장려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<br>8. 개간소득에 관한 사항<br>9. 쌀소득 등 보전직물체 지원에 관한 사항<br>10. 농업농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<br>11. 친환경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<br>12.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<br>13. 농업인 지역 지능에 관한 사항<br>14. 농업인 교육설계금 지원에 관한 사항<br>15. 농업인사업에 관한 사항<br>16. 농업인생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<br>17. 농업인생산기반개선에 관한 사항<br>18. 농업인시설 재해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<br>19. 농업인시설안전에 관한 사항<br>20. 정수부담금 관리에 관한 사항<br>21. 농산물 원산지 및 유전자 변형표시 지도에 관한 사항<br>22. 과수생산수출에 관한 사항<br>23. 과수생산 및 정비에 관한 사항<br>24. 가축사육 등 등록에 관한 사항<br>25. 동물병역 등 및 지도에 관한 사항<br>26. 원예농업 및 특용작물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<br>27. 농업인용수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<br>28. 농업인용수 생산 지원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<br>29.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<br>30. 농산물 생산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<br>31. 식량작물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<br>32. 농작물 병충해 방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<br>33.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<br>34. 축산진흥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<br>35. 축산물 유통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<br>36. 농·축·수산물 직거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<br>37. 축산물보육업, 운반업, 판매업 허가에 관한 사항<br>38.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<br>39. 유기농산물 보호·처리에 관한 사항<br>40.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<br>41. 어업허가 신청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<br>42. 어선등록말소 신청 및 어업휴업 신고에 관한 사항<br>43. 어선등록부본 및 어선표지판 교부에 관한 사항<br>44.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에 관한 사항<br>45. 어선 건조·개조 발주에 관한 사항<br>46.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항<br>47.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항<br>48. 수산증양식 및 어로시설사업에 관한 사항<br>49.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<br>50. 수산자원업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<br>51.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<br>52. 어항에 관한 사항<br>53. 어촌계 등 단체에 관한 사항<br>54.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에 관한 사항<br>55. 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<br>56.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<br>57.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사항<br>58. 수산물 가공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<br>59. 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<br>60.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<br>61.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<br>62. 수산재해에 관한 사항<br>63. 어업권분쟁 및 보상에 관한 사항<br>64.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<br>65. 내수수면어업에 관한 사항<br>66.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<br>67. 자원관리어업에 관한 사항<br>68.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에 관한 사항<br>69. 친환경농업 상품에 관한 사항<br>70. 친환경농업 상품에 관한 사항<br>71. <삭제> |

## 신·구 별표 대비표

### 【주민참여과】

| 현 행        | 개 정 안  |
|------------|--|
| 1~57. (생략) | 1~57. (현행과 같음)<br>58.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<br><신설> |

### 【건축주택과】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1~69. (생략)   | 1~69. (현행과 같음)  |
| 70. 도시경제국 소관 공공시설물(시설재난관리과 시설담당 사무 제외) 신축시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| 70.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시설물 신축시 공사감독 (회계과 공공시설담당 사무 제외)에 관한 사항<br><개정> |
| 71~76. (생략)  | 71~76. (생략)   |

### 【농수산과】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~70. (생략)               | 1~70. (현행과 같음) |
| 71.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생에 관한 사항 | 71. <삭제>       |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184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2월 2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 이유

- 농수산물 시설재생담당을 주민참여과로 부서조정 및 단위업무 명칭 변경하고, 건축주택과 세부사업명 추가를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내용

가. 농수산물 시설재생담당 부서조정 및 단위업무 명칭변경

- 농수산물 <삭제>
  - 단위업무 : 구 음식물자원화 시설재생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- 세부사업명 : 시설 설치계획 수립 (담당자 기안, 구청장 결재)  
기타 일반사항 (담당자 기안, 과장 결재)
- 주민참여과 <신설>
  - 단위업무 :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- 세부사업명 : 시설 설치계획 수립 (담당자 기안, 구청장 결재)  
기타 일반사항 (담당자 기안, 과장 결재)

나. '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·신고 및 협의' 단위업무에 세부사업명 추가

- 건축주택과 <신설>
  - 세부사업명 : 건축허가 변경허가 (담당자 기안, 과장 결재)



### 3. 의견 제출

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.3.4.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기획홍보실장, 전화: 052-241-7102, 팩스: 052-241-710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 4. 기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」 일부개정안은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기획홍보실에 비치하여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

## 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복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주민참여과 단위업무 51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단 위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 부 사 무 명     | 기안 및 전결구분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구<br>정<br>장<br>결<br>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담당자       | 실·<br>과장 | 국<br>장 | 부<br>국<br>청<br>장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실무자 담당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50. <생략>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51. 세대공간 창의<br>놀이터 건립 및<br>운영에 관한 사항 | 가. 시설 설치계획 수립 | 기안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기타 일반사항    | 기안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건축주택과 단위업무 18번 중 세부사무명 가(10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단 위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 부 사 무 명      | 기안 및 전결구분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구<br>정<br>장<br>결<br>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    | 실·<br>과장 | 국<br>장 | 부<br>국<br>청<br>장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실무자 담당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17. <생략>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18. 건축법에 의한<br>건축허가·<br>신고 및 협의 | 가. 건축허가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) ~ (9) <생략>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0) 건축허가 변경허가 | 기안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~ 너. <생략>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19. ~ 36. <생략>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농수산과 단위업무 107번은 삭제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별표 대비표

○ 주민참여과

| 현             |           | 행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단 위 업 무       | 세 부 사 무 명 | 기안 및 진결구분<br>담 당 자<br>실 : 과 장<br>실무자 담당 장 | 구 칭 장 결 계<br>부 구 칭 장<br>구 장 | 기안 및 진결구분<br>담 당 자<br>실 : 과 장<br>실무자 담당 장 | 구 칭 장 결 계<br>부 구 칭 장<br>구 장 |
| 1. ~ 50. <생략>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시설 설치계획 수립 <신설><br>나. 기타 일반사항 <신설>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건축주택과

| 현   |           | 행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 정 안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단 위 업 무   | 세 부 사 무 명 | 기안 및 진결구분<br>담 당 자<br>실 : 과 장<br>실무자 담당 장 | 구 칭 장 결 계<br>부 구 칭 장<br>구 장 | 기안 및 진결구분<br>담 당 자<br>실 : 과 장<br>실무자 담당 장                        | 구 칭 장 결 계<br>부 구 칭 장<br>구 장 |
| 1. ~ 17. <생략><br>가. 건축허가<br>18.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, 신고 및 협의<br>19. ~ 36. <생략> |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건축허가<br>(1) ~ (9) <생략><br>(10) 건축허가 변경허가 <신설><br>나. ~ 나. <생략>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농수산과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개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정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안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단 위 업 무                    | 세 부 사 무 명                   | 기안 및 전결구분 |         | 기안 및 전결구분 |         | 단 위 업 무        | 세 부 사 무 명 | 기안 및 전결구분 |         | 기안 및 전결구분 |         | 단 위 업 무 | 세 부 사 무 명 | 기안 및 전결구분 |         | 기안 및 전결구분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 당 자     | 실 : 과 장 | 담 당 자     | 실 : 과 장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담 당 자     | 실 : 과 장 | 담 당 자     | 실 : 과 장 |         |           | 담 당 자     | 실 : 과 장 | 담 당 자     | 실 : 과 장 |
| 1. ~ 106. <생략>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1. ~ 106. <생략>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
| 107. 장난감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| 가. 시설 설치계획 수립<br>나. 기타 일반사항 | 기안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107. <삭제>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